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등 8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9년 4월 9일

○ 회부일자 : 2019년 4월 11일

3. 제안사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 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안 제3조).
-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 6조).
-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존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2008년 12월26일 제정해 시행해 오던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원 안	개 정(2017. 12. 29.)
<p>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p> <p>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 또는 규칙으로</u> 정할 수 있다.</p>	<p>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p> <p>② ----- ----- ----- ----- -----조례로----- -----</p>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직위를 기획관리실장으로 특정함.
 -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규정을 준용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규정한 것임.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민간 위촉직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확보 및 민(民) 참여 확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 과정, 변동사항 및 추진실적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
 -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실명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는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담당자 교육 실시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의 신뢰증진이라는 정책실명제의 중요성과 목적에 따라, 도가 현재까지 규칙으로 정해 시행해오던 것을 조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